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187
- 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 (찬성의원 38명)
- 발 의 일 : 2021년 2월 5일
- 회 부 일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정치·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,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.
- 이에 2020년 12월 9일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함(안 제15조 제2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'20. 2.16.~2. 23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 및 청구 주민 수 기준을 낮추는 등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, 감사청구 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「지방자치법」 개정*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* **지방자치법**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, 전부개정]

◇주요내용(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내용 발췌)

마.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(제21조).

- 1)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,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·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.
- 2)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.

가. 주민감사청구 연령 확대, 용어 정비 등 개선(안 제15조)

- 안 제15조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 전부개정¹⁾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 제16조에서 법 제21조로 옮겨 규정하면서,

1)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전부개정]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② (이하 생략)

-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'19세 이상'에서 '18세 이상'으로 확대하고, 감사청구 수단 요건 중 '연서(連署)'를 '연대 서명'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주민감사청구) ① <u>법 제16조</u> 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(이하 “주민감사청구”라 한다)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<u>주민연서</u> 에 의하여야 한다.	제15조(주민감사청구) ① <u>법 제21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민 연대 서명</u> -----.
② <u>법 제16조</u> 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<u>연서</u> 로 한다.	② <u>법 제21조</u>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<u>연대 서명</u> 으로-----.

- 본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서의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다만,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 청구는 감사 청구 주민 수 상한 기준을 기존 500명 에서 300명 이내로 법 개정을 통하여 하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,

※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 요건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< 본 조례개정안 관련 지방자치법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
<p>제16조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<u>시·도는 500명</u>,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<u>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</u>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,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(이하 생략)</p>	<p>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<u>시·도는 300명</u>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(이하 생략)</p>

-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 및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로 볼 때, 본 조례(제15조제2항)의 현행 200명 이상의 감사 청구 주민 수 제한 사항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<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연도별 감사 처리 현황 > (단위: 건)

연도	합계	수리				각하			명부 미제출 등
		소계	주민 감사	시민 감사	직권 감사 등	소계	주민 감사	시민 감사	
합계	43	32	11	12	9	6	3	3	5
2020	10	9	3	2	4	-	-	-	1
2019	19	15	2	8	5	1	1	-	3
2018	13	8	5	2	1	5	2	3	-

*연도별 감사청구심의회(옴부즈만위원회) 개최일 기준

현행

<뒷면>

작성요령

1. 청구(신청)인

<개인>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.

① 청구(신청)인 : 외 명이라고 쓰고,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.

※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

※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.

③ 주소 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.

④ 연락처(전화) :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.

<단체> 개인(50명 이상 **연서**)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.

⑤ 단체이름 :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.
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

⑩ 단체설립 목적 :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.

⑪~⑬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.

2. 청구 동기 :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, 취지,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.

3. 감사청구 사항 :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.

※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.

※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.

<구비서류>

1. 관련 증빙자료 :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.

2. 기타 :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.

※ 시민(50명 이상)이 **연서**한 청구인명부 :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서명(날인)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.(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)

수정의견

<뒷면>

작성요령

1. 청구(신청)인

<개인>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.

① 청구(신청)인 : 외 명이라고 쓰고,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.

※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

※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.

③ 주소 :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.

④ 연락처(전화) :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.

<단체> 개인(50명 이상 **연대 서명**)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.

⑤ 단체이름 :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.
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

⑩ 단체설립 목적 :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.

⑪~⑬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.

2. 청구 동기 :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, 취지,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.

3. 감사청구 사항 :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.

※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.

※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.

<구비서류>

1. 관련 증빙자료 :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.

2. 기타 :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.

※ 시민(50명 이상)이 **연대 서명**한 청구인명부 :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서명(날인)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.(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)

< 현행 시민감사/주민감사 제도 비교 >

구분	시민감사	주민감사
근거	○ 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	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조례 제15조
청구 주체	○ 18세 이상 시민 50인 이상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단체 대표자 ⇒ 시장 ※ 시민단체는 「비영리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	○ 19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 연서 ⇒ 주무부장관 ○ 자치구 조례에 정한 주민 수 : 200명 (도봉 등 6개구 100, 동작 등 7개구 150) ⇒ 시장
청구 대상 · 기관	○ 우리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 중 위법·부당사항 -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- 자치구(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부터 제171조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) -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- 시의 위탁사무기관 및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	○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,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 - 자치구 및 구청장 사무⇒시장 - 시 및 시장 권한 사무 ⇒주무부장관
제외 사항	○ 시의회에 관한 사항 ○ 소송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○ 개인사생활 침해우려 및 타 기관 기 감사 진행 또는 확정된 사항 ○ 검찰,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중인 사항 ○ 조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또는 확정사항	○ 수사나 재판 관여 사항 ○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및 타 기관 기 감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○ 소송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
효력	○ 감사결과 시정	○ 감사결과 시정

다. 기타 (부칙)

- 안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,
- 이는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시행일(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, 공포일 2021.1.12.)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임.

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시·도: 300명 이상
2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: 200명 이상
3.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: 150명 이상

제15조(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전문위원 김태한

입법조사관 최석훈